

대구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3241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324160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택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김민수

변론 종결2022. 6. 8.

판결 선고2022. 8. 19.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D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해지와 이체를 통한 2019. 1. 2.자 금전지급행위를 17,869,01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69,01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운반계약 체결

- 1) 원고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 2) 원고는 E와 덤프트럭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2018.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영주시 J에 있는 매립공사에 관하여 덤프트럭 운반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운반대금 합계 165만 원(이하 '2018년 3월 및 4월분 운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3) 그 후 원고는 E와 새로운 덤프트럭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경부터 12.경까지 영주시 J에 있는 복구공사에 관하여 덤프트럭 운반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운반대금(장비 사용료 등) 합계 11,540,000원(이하 '2018년 11월 및 12월분 운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 및 금전지급

- 1) C과 피고는 2018.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하였다.

1. 당사자 표시

양도인: C

양수인: 피고

채무자: D 주식회사

2.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기명정기예금 150,000,000원

3. 양도, 양수 내용

가.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2항 양도할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정히 양수하였다.

나. 양도인과 채무자는 양수인이 위 채권을 추심함에 이의 없기로 한다.

다.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양수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도인이 잔액에 대하여 변제 의무를 진다.

라. 양도할 채권은 G에 담보제공이 되어 있는바, 2018. 10. 30.까지 양도인 책임으로 담보를 해제하여 주기로 한다.

4. 채권양도통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할 수 있다.

2) C은 2019. 1. 2. 자신의 D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해지하고, 그 잔액 151,987,126원 중 1,987,126원을 자신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C의 피고에 대한 150,000,000원 송금행위를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다. C과 원고 사이의 지불이행각서

1) C은 2019. 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E 대표 C은 H 소재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덤프트럭 운반비 18년 3월, 4월 1,650,000원((2018년 3월 및 4월분 운반대금)과 복구에 사용된 18년 11월, 12월 사용료 11,540,000원(2018년 11월 및 12월분 운반대금)을 합한 13,190,000원을 원고에게 2019. 5. 30.까지 지불한다.

아울러 C은 1과 체결한 2018. 11. 1.의 지불각서에 원고에게도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각서인: E 대표 C

※ 특약사항: 현재 E에서 안동작업장 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1차, 2차 분납으로 위 날짜까지 이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C 및 E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 장비사용료 등 청구의 소(위

법원 2019가소118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5. "C 및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 2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13,190,000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인 위 금전지급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7,869,016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 C은 2018. 9. 3. 원고에게 2018. 11.경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운반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담보물수령증(담보물: D 주식회사에 대한 기명정기예금 150,000,000원)을 제시하며 2018년 3월 및 4월분 운반대금 165만 원과 새로운 운반계약 대금을 자신이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13,190,000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위 2018. 9. 3.이고, 위 약속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므로, 위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7,869,016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18년 3월 및 4월분 운반대금에 관하여 본다. 위 운반대금 지급 의무는 E의 채무에 불과하고, E는 C와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E의 대표자인 C이 위 운반대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약속 당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법률관계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2018년 11월 및 12월분 운반대금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과 같이 C이 2018. 9. 3.경 원고에게 새로운 운반계약 체결을 제안하며 개인적 지위에서 향후 발생하게 될 위 운반대금 지급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C이 실제로 운반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안 시점에는 새로운 운반계약의 실제 체결 여부, 체결 시기, 운반용역의 제공여부 등이 불확실하므로, 위 약속 당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법률관계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태천

판사이나현

판사안정현